

주주제위

2017 년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덕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 363 조와 당사 정관 제 21 조에 의거하여 2017 년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 542 조의 4 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같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7 년 01 월 04 일(수) 오전 9 시

2. 장 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미근동) 임광빌딩 5 층 SUPEX 홀

3.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안건 : 감사보고

나 부의안건

제 1 호 의안 : 주식의 포괄적 교환 승인의 건 (별첨참조)

제 2 호 의안 : 자진상장폐지 신청의 건 (별첨참조)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 542 조의 4 제 3 항 규정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및 당사 본점에 비치 또는 공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의 신분증

7. 기타사항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016 년 12 월 20 일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상 순 (직인생략)

[별첨] 제 1 호 의안 : 주식의 포괄적 교환 승인의 건

가. 목적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주)가 에스케이텔레콤(주)의 100% 자회사로 편입되어 경영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플랫폼 영역에서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나. 주식교환 계약서의 주요내용

1) 주식교환 당사회사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 에스케이텔레콤(주)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주)

2) 주식교환일 현재 에스케이텔레콤(주)를 제외한 나머지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주)

주주 (이하 '주식교환 대상주주')가 소유한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주) 주식은 주식교환일에 에스케이텔레콤(주)에 이전되고, 그 대가로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교환신주 발행에 갈음하여 주당 현금 2,814 원을 교부함

3) 주식교환 일정

- 주식교환계약일 : 2016 년 11 월 25 일
- 주식교환계약승인 주주총회 : 2017 년 01 월 04 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2017 년 01 월 04 일~2017 년 01 월 24 일
- 주식교환일: 2017 년 2 월 7 일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주식매수예정가격: 2,956 원
- 산출근거 : 상법 제 360 조의 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5, 동법 시행령 제 176 조의 7 제 3 항
- 행사요건 및 방법 :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의 효력발생에 관한 사항

에스케이텔레콤(주)의 이사회 또는 에스케이케뮤니케이션즈(주)의 주주총회에서 본 계약의 승인 안건이 부결된 경우, 본 계약은 당사자들의 통지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

1) 주식매수예정가격 및 산출근거

(가) 주식매수예정가격: 2,956 원 (기준일 : 2016 년 11 월 23 일)

(1) 최근 2 개월 가중산술평균가격 : 3,176 원

(2) 최근 1 개월 가중산술평균가격 : 2,821 원

(3) 최근 1 주일 가중산술평균가격 : 2,870 원

(1),(2),(3)의 산술평균가액 : 2,956 원

(나) 산출근거: 상법 제 360 조의 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

의 5, 동법 시행령 제 176 조의 7 제 3 항

2)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상법 제 360 조의 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5 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 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5, 동법 시행령 제 176 조의 7 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이사회 결의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거나 또는 그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i) 해당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이사회 결의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주식교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식교환 당사 회사인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주)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법인이므로, 그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당해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3)행사방법

(가) 반대의사의 통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 중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2017년 01월 03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상법 제 360 조의 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5에 의거, 회사 주주 중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에 찬성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 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다) 주식매수청구기간 : 2017 년 01 월 04 일 부터 2017 년 01 월 24 일 까지

※ 상법 제 360 조의 5 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라) 접수장소: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경우 : 해당 증권회사

(마) 주식매수대금의 지급방법

주식매수대금은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하는 날로부터 1 개월 이내 지급할 예정이며 명부주주는 서면으로 신고한 계좌로, 실질주주는 거래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각각 지급할 예정입니다.

라. 완전모회사 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뜻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내용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1.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이후에는 매수청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거래하시는 증권회사의 사정에 따라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통지서' 및 '주식매수청구서' 제출시한 1~2 일전에 마감될 수 있으니 반드시 거래증권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본건 거래는 장외주식거래로 0.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주주들의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고, 거주자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거주자인 주주가 소득세법상 대주주로서 1 년 미만 주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주주가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가액의 11%(지방소득세 포함)와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유무,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의 조세조약 체결 유무 및 그 내용 등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첨] 제 2 호 의안 : 자진상장폐지 신청의 건

가. 목적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완료될 경우에 한하여, 자진상장폐지를 신청함

나. 자진상장폐지 신청예정일 : 2017 년 2 월 7 일